

## 아내강간, 데이트강간

# 남성의 권리인가? 범죄인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온갖 꽃과 신흥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토해내고 있다.

진정 평화롭고 행복하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폭력 없는 가정과 사회. 우리는 괜찮은가.

많이 알려진 대로 성폭력 가해자의 80%는 아는 사람, 그 중에서도 가족(친족) 구성원이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어떤 의미에서 여성에겐 국가나 자본보다 가족이 더 실질적인 억압자인 셈이다.

그러나 가족이 평화와 안식의 공간이라는 남성 중심적 신화는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가정은 육아, 가사, 가정 관리 등 노동의 현장이며, 또한 그 중 적지 않은 여성들에게 가정은 폭력의 공간이다.

가정폭력방지법, 성폭력특별법 제정 운동 과정에서 여성운동가들은 아내 강간(부부 사이의 강간, marital rape)도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으나, 입법 내용에 포함되지 못했다.

당시 모 국회의원의 발언은 이 문제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 시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런 법이 제정되면 출근하는 남자들 다 잡아 가둬야 할 것”이라며, 아내 강간처벌은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 >> 남편의 입장에서 성관계는 아내의 의무

사실 우리나라 부부들에게 아내를 강간하는 것과 부부간의 성관계는 별로 구분되는 행위가 아니다. 보통 남편들은 아내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섹스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서울시 거주 여성 1,500명 중 92.7%가 아내가 남편의 기분에 맞추어 ‘성행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기혼 여성의 25.2%가 아내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부계(父系, 夫系) 중심의 가족 제도에서 여성의 성활동(섹슈얼리티)은 자녀를 낳기 위한 재생산 활동과 남편의 성적 상대로서의 기능에 국한되기 때문에, 남편의 성적 요구를 수용하고 ‘견뎌 내는 것’은 흔히 아내의 ‘의무’로 간주된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 부부간의 성 관계가 아내의 입장에서 폭력이지만, 남편의 입장(=우리사회의 통념)에서는 ‘해줄 것은 해주어야’ 하는 아내의 의무이므로, 강간이 아니게 된다. 즉, 남편의 성폭력은 ‘의무를 거부한 아내와의 부부 관계’로 해석된다. 남성 중심 가족에서 가장(家 ‘長’)인 남편은 집안의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는데, 그 중 아내의 몸은 아주 핵심적인 소유물로 인식된다.

하지만 앞에 인용한 국회의원의 말대로, 이러한 일상적인 아내 강간까지 처벌하려면 한국의 사법 제도가 마비될 것이다.

여성운동 세력이 요구하는 아내 강간 처벌의 ‘현실적’인 내용은, 이혼 혹은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강제적 성행위를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폭력을 쓰거나, 아내 구타 후 ‘화해’의 차원에서 가해 남편이 흔히 시도하는 ‘성행위’이다.

구타 남편들은 아내 구타 후 강간을 갈등(폭력) 해결책으로서 화해라고 생각하지만, 피해 여성들은 물리적 폭력보다 더한 모멸감과 비참함을 호소한다.

성폭력,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인 아내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정상', '로맨스' 라고 경험하는 성관계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 폭력적인 내용으로 의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 >> 아내의 몸은 남편의 소유인가?

성폭력, 그 중에서도 가장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인 아내 강간이나 데이트 강간이 범죄로 인식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흔히 '정상', '로맨스' 라고 경험하는 성관계 자체가 이미 남성 중심적, 폭력적인 내용으로 의미화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폭력과 정상적인 성관계 사이에는 어떤 질적인 간극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연속선이라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우리가, 실상은 폭력적인 영화를 '액션' 영화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우리는 이미 액션이 폭력을 의미하는 세계에 살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성폭력 범죄가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로, 집단 성폭력이나 어린이 성폭력처럼 피해자가 완전히 불가항력적 상황에 있을 때뿐이다.

대부분은 '강간이나 화간이나' 의 논쟁 속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명예 훼손이나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그러므로 연인간에 배우자간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반인들에게 거부감을 줄 수밖에 없다.

"아내폭력은 있을 수 없다"는 주장이, '아내를 강간해

서는 안 된다' 로 읽히는 것이 아니라, '부부(연인)사이에서 강간이라는 개념이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아내의 몸은 남편의 소유이므로' 가 되는 것이다.

친밀한 사이에서는 폭력이 발생할 수 없다는 논리는, 정치/ 권력/ 민주화/ 인권 등의 개념은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것인지 남성과 여성간의 관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전제한 것이다.

노동자와 자본가, 민주화 세력과 억압적인 국가 권력간의 관계처럼 남성이 남성에게 폭력을 가하면 '정치' 이고 '투쟁' 이 되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폭력은 늘 불가피한 스트레스의 표출이라는 개인 심리적 문제가 되거나 기껏해야 '격렬한 로맨스' 로 의미화 된다.

성폭력은 남성이 여성에게 행사하는 권력의 형태이며, 여성의 몸에 대한 폭력으로서 여성의 인권권, 사회적 성원권에 대한 침해이다. 때문에 아무리 친밀한 사이라도, 부부간이라도, '성관계를 동의하고 여관에 들어가 두 사람 다 옷을 벗고 누운 상황' 이라 할지라도, 그 순간 여성이 '노' 했는데 남성이 시도했다면, 그것은 성폭력이다.

**정희진** 경희대 여성학 강사,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가정폭력과 여성인권> 저자